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인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7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1월 14일

발의자 : 김인제, 김정태, 우미경, 김기대,  
박운기, 우창윤, 유동균, 유찬종,  
이창섭, 전철수, 남창진, 이숙자,  
이석주 의원(13명)

## 1. 제안이유

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도시계획 관련 중요안건을 심의·자문하는 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”의 운영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, 시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의 재위촉시 연임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심의위원의 장기위촉을 제한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시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연임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공백기를 거치지 않고 재위촉 될 경우 이를 연임으로 간주도록 함 (안 제57조제5항 신설).
-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준용규정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조정함 (안 제63조제1항).
-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적용되는 준용규정을 삭제함 (안 제63조의2제4항 삭제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 서울특별시조례 제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촉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재위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.

제63조제1항 중 “제5항부터 제10항”을 “제6항부터 제11항”으로 하고, 제63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7조(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~ ④ (생 략)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57조(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</u>  <u>위촉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재위</u>  <u>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</u>  <u>본다.</u></p>
<p>⑤ ~ ⑩ (생 략)</p>	<p>⑥ ~ ⑪ (현행 제5항부터 제10 항까지와 같음)</p>
<p>제63조(공동위원회의 운영)</p> <p>① 제56조, 제57조제2항, <u>제5항</u>  <u>부터 제10항, 제58조제2항부터</u>  <u>제6항까지, 제58조의2, 제58조의</u>  <u>3,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</u>  <u>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.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63조(공동위원회의 운영)</p> <p>① -----, <u>제6항</u>  <u>부터 제11항, -----</u>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3조의2(도시계획 정책자문단  설치·운영 등)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<u>④ 제57조제4항부터 제10항, 제</u>  <u>58조의2, 제62조의 규정은 자문</u>  <u>단의 운영에 준용한다.</u></p> <p>⑤ (생 략)</p>	<p>제63조의2(도시계획 정책자문단  설치·운영 등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(삭 제)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